

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인정 기준

□ 기본원칙

- 2~4년제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자(2018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
『고등교육법』 상의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 상의 '분교'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(교육부에서 분교로 인가받은 경우만 인정)

<예시>

- ① 건국대학교 : 충북 충주 ② 고려대학교 : 충남 서창
- ③ 단국대학교 : 충남 천안 ④ 동국대학교 : 경북 경주
- ⑤ 상명대학교 : 충남 천안 ⑥ 연세대학교 : 강원 원주
- ⑦ 홍익대학교 : 충남 조치원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

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(4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
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다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지방대학 졸업여부 검증

○ 졸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임을 검증하되,

○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학교장확인서 등)를 제출받아 검증